

의안번호	제370호
의결 연월일	2016년 월 일 (제347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연구소 신설과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의 부서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기구 조정 (안제25조)
 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: 유기농업연구소 신설
- 분장사무 조정 (안제7조, 제9조)
 - 미래전략산업 발굴 업무이관 : 미래전략기획단 → 경제통상국
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이관 : 여성정책관 → 행정국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,
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
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여성정책관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②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행정 분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연구소	보은군 관내
와인연구소	영동군 관내
유기농업연구소	괴산군 관내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7. ~ 17. (생 략)</p>	<p>제7조(행정국)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</u> 8. ~ 18. (현행 7.~17.호와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9조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8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경제통상국) ----- -----</p> <p>1. ~ 18. (현행과 같음) 19. <u>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</p> <p>① 생 략 ② <u>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를 둔다.</u>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포도 연구소</td> <td>옥천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마늘 연구소</td> <td>단양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수박 연구소</td> <td>음성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대추 연구소</td> <td>보은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와인 연구소</td> <td>영동군 관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포도 연구소	옥천군 관내	마늘 연구소	단양군 관내	수박 연구소	음성군 관내	대추 연구소	보은군 관내	와인 연구소	영동군 관내	<p>[별표 1]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포도 연구소</td> <td>옥천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마늘 연구소</td> <td>단양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수박 연구소</td> <td>음성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대추 연구소</td> <td>보은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와인 연구소</td> <td>영동군 관내</td> </tr> <tr> <td>유기농업 연구소</td> <td>괴산군 관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포도 연구소	옥천군 관내	마늘 연구소	단양군 관내	수박 연구소	음성군 관내	대추 연구소	보은군 관내	와인 연구소	영동군 관내	유기농업 연구소	괴산군 관내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								
포도 연구소	옥천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늘 연구소	단양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박 연구소	음성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추 연구소	보은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와인 연구소	영동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 칭	위 치																										
포도 연구소	옥천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늘 연구소	단양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박 연구소	음성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추 연구소	보은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와인 연구소	영동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기농업 연구소	괴산군 관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